

[보조금분쟁] 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별



구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일반국민)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심신기능이 취약한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포함)
제공자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제공장소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또는 수급자 가정
제공형태	의사, 간호사, 등이 공동으로 제공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등 장기요양요원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제공
주요 서비스	수술, 처치 등 의료서비스	일상생활 수행을 도와주는 장기요양서비스 방문간호 등 일부 의료영역 서비스 포함
서비스 한도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시까지 자유롭게 이용가능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이용절차	별도의 신청없이 이용가능	인정신청 후 등급 (1~5등급)을 받아야 이용가능
행정제재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위반사실공표	좌동
자격증명	건강보험증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종류	요양급여+요양비+부가급여 건강검진	현물급여 (재가급여+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관리운영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에 기인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기관지정	당연지정제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경우에 한함)
급여비용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심사, 지급
수가방식	행위별 수가제 + 포괄적 수가제 (일부) 의료계 대표자와 계약방식	일당, 회당, 시간당 정액제

<장기요양기관 설치절차 및 명칭>

구분	설치기준	제공 급여	명칭	광의의 명칭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노인복지법상 시설·인력기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노인복지법상 시설·인력기준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③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재가급여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의제됨	

①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부당이득 환수)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 (업무정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 (과징금)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신청 가능
 - *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되며 12개월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허용

②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 (자격정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 (형사고발)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 (명단공표)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보조금유용, 행정소송,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